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고동진 · 서천호
정희용 · 박대출 · 김은혜
김 건 · 김상훈 · 김도읍
강선영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순직군경을 ‘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’으로, 공상군경을 ‘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’으로 정의하고 있음.

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,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‘소방’을 추가하

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공상군경’을 ‘공상군경소방’으로, ‘순직군경’을 ‘순직군경소방’으로 변경하고, 이에 따라 현행법의 ‘공상군경’을 ‘공상군경소방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(안 제6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상군경으로”를 “공상군경소방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“공상군경으로”를 “공상군경소방으로”로 한다.

제7조의3제1항제1호 중 “공상군경으로서”를 “공상군경소방으로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상군경의”를 “공상군경소방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)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·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,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<u>공상군경</u> 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	제6조(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상군경소방</u> 으로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·② (생략)	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(臨床所見書)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. 다만,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.

2. 3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 ① 국
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
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

③

[illegible]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수당의 지급 등) ① 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-ruled paper.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, each set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. Thes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when writing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.

1. -----

공상군경소방으로
서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
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) ① --

